

#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2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2025년도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안산시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그 기한을 5년으로 연장 필요

## 2. 주요내용

- 안산시 예술단 운영위원회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(안 제11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5. 9. 17. ~ 2025. 10. 10. (23일간)

### 사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문화체육관광국
입	문화예술과장	박 향 미
안	예술팀장	윤 희 정
자	담당자 (연락처)	송 지 윤 (481-2064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 12월 31일</u> 로 한다.	제11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 ----- <u>2030년 12월 31일</u> -----.

## □ 부대의견

### **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축제심의·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- 「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조례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, 일부 안건에서는 미첨부 사유가 오기재 되거나 구체화 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음.
- 따라서,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첨부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재하고, 산출기초·예상 소요비용·근거자료를 포함하는 등 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’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·제출하기 바람.